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손용석(657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1831호

시행일자 2020. 1. 6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」 제정 공고  
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5호 (2019.7.31.)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-424호 (2019.12.30.)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-243호 (2019.12.30.)

3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 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75호, 2019. 7. 31.) 제5조제4항에 의한 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·공고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○ 주요내용 :

- 공고 제정 취지
-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
  - 서식별 작성요령
  - 기타 심사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

○ 시행일 : 공고한 날부터 시행 (2019.12.30.~)

○ 관련부서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정보표준화부

- 붙임 : 1. 공고문 및 주요내용 각 1부.  
2. 별지 및 별첨 각 1부.  
3. 공고 FAQ(일반/개발자)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